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3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유동수·강준현·김윤덕

박균택 • 박홍배 • 윤준병

복기왕 · 김성회 · 박민규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 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 매체가 됐음. 연령별로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국민의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 고 있으며 60대는 2016년 60.3%에서 2021년 91.7%, 70대 또한 2016 년 17.6%에서 2021년에는 60.1%까지 급증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쇼핑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4분기 13만4,900원, 2023년 13만200원, 2023년 2분기 12만1,900원, 2023년 3분기 12만9,900원으로

1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음.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 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함(안 제 126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요금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			
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			
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			
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			
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			
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			
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3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 0)

가. · 나. (생 략) <신 설>

4. ~ 7. (생략)

③ ~ ⑩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
비스를 사용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지
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